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박정현 · 이재정 · 모경중
신정훈 · 박홍배 · 이광희
서미화 · 황정아 · 양부남
임미애 · 김현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924”를 “2,424”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특별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및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 ----- ----- ----- ----- ----- -- 2,424-----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생략)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 ----- ----- ----- ----- ----- ----- <u>시의</u> ----- ----- <u>특별시의</u> ----- ----- ----- ----- ----- ----- ----- <u>특별시에</u>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시장 또는 군수</u> 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 ① ----- ----- ----- ----- ----- ----- ----- ----- ----- ----- ----- <u>시장·군수</u> 또는 <u>구청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